

공

고

◎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-60호

전파법 위반(검사불응)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3일

부산전파관리소장

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

성명	허가번호	호출명칭	주소	위반내용	처분내용
유*선	42-2018-20-0000405	327진흥호	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5길	정기검사불응 (1차위반)	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(2022. 9. 13. ~ 2022. 10. 12.)
강*석	42-2018-20-0000483	320수영호	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		
김*훈	42-2020-20-0000156	305대명호	경상남도 통영시 착량길		
허*용	42-2018-20-0000412	300오피싱호	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		
임*선	42-2020-20-0000132	301성민호	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길		
장*순	42-2020-20-0000265	300오렌지호	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51번길		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
3. 처분일자: 2022. 9. 13.

4. 참고사항

가.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,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.

나.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1-974-5192, 팩스051-974-518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